

---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2023년 9월 27일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 2023 곡성군가족센터 안전보건 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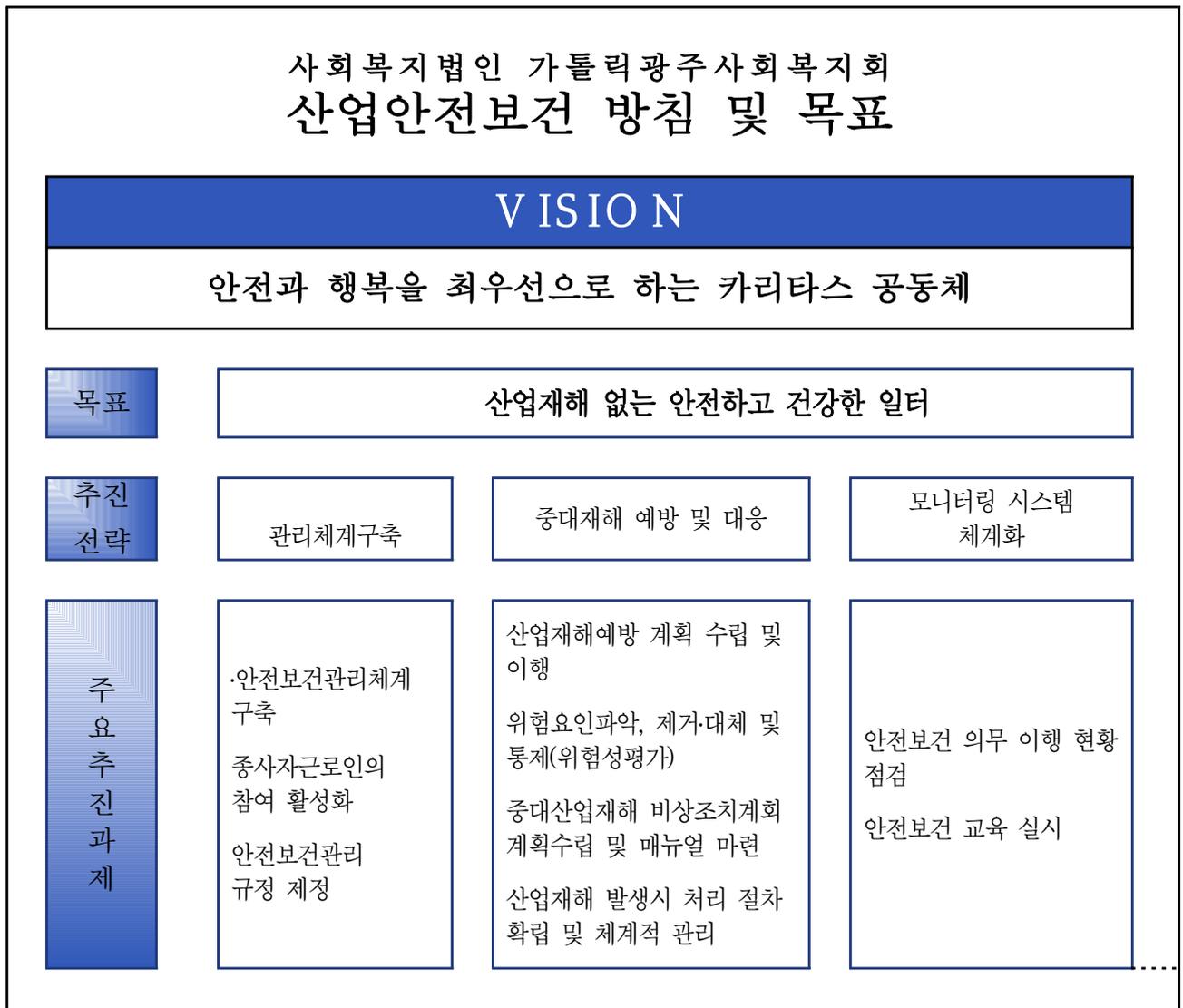
※ 곡성군가족센터 시설안전 매뉴얼 내 「안전한 근로환경 및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추가

## 제1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1. 안전보건 운영방침

#### ○ 안전보건 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킴



##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안전보건 경영 방침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는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전 직원의 철저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선언한다.

1.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기본원칙과 규정을 실천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보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 하여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추구한다.
3.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며, 안전보건 사고·사건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5.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태를 점검하여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6. 안전보건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한다.
7. 산하시설 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자원 지원 및 정보 공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8.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실제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한다.
9. 본 방침을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경영을 실현하여 신뢰와 협력을 강화한다.

2023. 10. 1.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대표 (서명)

## 곡성군가족센터 안전보건 운영 방침

■ 미션 :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가족복지 구현

■ 비전 : 곡성군 가족복지의 대표 플랫폼, 맞춤형 가족복지

■ 핵심가치 : 인간의 존엄성, 연대성, 보조성, 공동선

■ 운영 실천방법

곡성군가족센터는 종사자,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전 직원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운영을 실천하여 생명존중 실천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영역	안전관리책임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시설안전관리인	소방안전관리자
담당	이금주	김지민		

곡성군가족센터는 법률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 2. 안전보건 관리조직

### ○ 안전보건 조직도



### ○ 안전보건 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시설장)	<b>《안전관리책임자I》</b> -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 <b>《위험성평가 총괄》</b> ○ 사업주의 의지 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예산지원 및 산업 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안전관리 부책임자 (팀장)	<b>《안전관리 부책임자》</b>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시설장) 부재 시 업무 대행 - 안전보건 관리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안전관리 상황 모니터링</li> <li>-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 점검 및 보고</li> </ul> <p><b>《위험성평가 실행관리 및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li> <li>○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li> <li>○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 관련 자료 등을 기록</li> <li>○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li> <li>○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li> </ul> <p><b>《위험성평가 실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li> <li>○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li> <li>○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절차와 내용</li> <li>○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험성평가담당자</p>	<p><b>《시설관리업무 실무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안전업무 실무 책임자</li> <li>-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시설 설비, 구조물 등 점검, 안전관리일지 작성</li> <li>- 시설 정기(반기), 수시 안전점검 &amp; 결과보고</li> </ul> <p><b>《안전보건관리담당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li> <li>- 관련 의무교육 이수</li> </ul> <p><b>《소방안전관리자<sup>2)</sup>》</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및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및 그 밖에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li> </ul>
<p style="text-align: center;"><u>근로자(작업자)</u> <u>(시설 근로자)</u></p>	<p><b>《위험성평가 참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li> <li>○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li> <li>○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li> </ul>

1)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는 사회복지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임무를 설명하고 있음

2) 근거 :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와 제23조

## ○ 책임 및 권한

- 경영책임자(법인 대표)

-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른 법인과 수행기관의 안전보건 목표를 승인한다.
- ② 매년 이사회 등을 통해 법인과 수행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 안전관리책임자(시설장)

-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주관한다.
- ②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 안전관리 부책임자(팀장)

- ① 안전보건 추진계획에 따른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 ② 승인된 안전보건 추진계획에 따라 부서,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종사자, 참여자 : 수립된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되는 추진계획을 숙지하고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리

- 반기 1회(6월, 12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업무 수행평가를 진행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평가표

□ 기관명 : 곡성군가족센터

점검일자 : 2023년    월    일

분 야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개선 요망사항	비고
		양 호	보 통	불 량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 여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 교육 실시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					
종사자의 위험 방지						

● 반기 1회 점검

\*출처: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2022)

###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 반기 1회(6월, 12월)이상 안전보건관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대체·통제 점검을 위한 조사 진행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을 위한 조사방식(①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붙임1), ②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붙임2), ③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붙임3), ④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붙임4~6))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

#### ○ 유해위험요인 개선

- 안전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대체·통제 점검을 위한 조사 이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목록표를 작성하고, 붙임7~8을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표시하고 관련된 목록은 근로자에게 설명, 서면 등을 통해 설명
-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안전조치 이상 유무를 감시하기 위한 담당자 지정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고하기 위한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실시

#### ○ 위험성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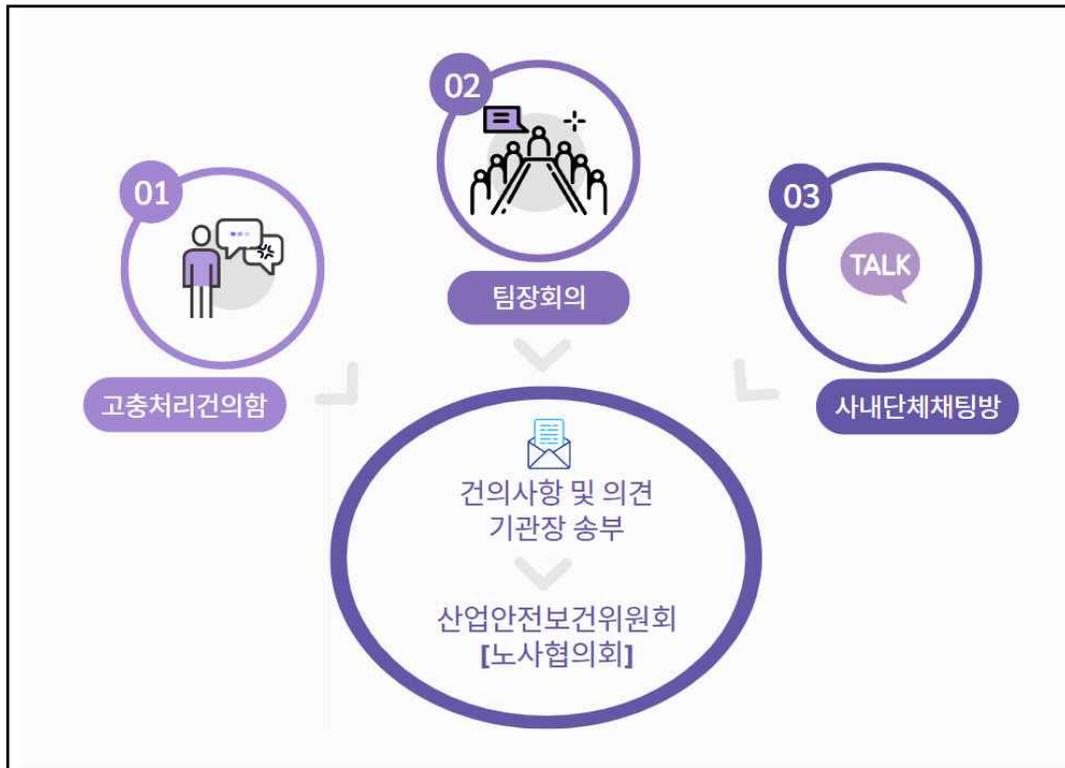
- 위험성 평가는 위험평 평가 실시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정기평가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수시평가는 계획 실행 전에 실시
- 일반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지를 토대로 자체 진행함
- 자체 평가를 진행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라 붙임9. KRAS(표준 위험성평가)양식을 활용하여 평가 진행

#### 4. 종사자 참여

##### ○ 종사자 참여 방안

###### ○ 종사자 의견 청취 방법

- 사내 온라인시스템(전자결재 등)이나 건의함, 팀 단위의 회의, 오픈채팅방(카카오톡), 개별 SNS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 진행



###### ○ 의견청취 절차

###### 1) 내부 의사소통

- ① 관리감독 총괄(팀장)는 안전보건 경영활동 및 건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경영활동 및 건의사항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시설장)에게 송부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시설장)는 접수된 안전보건 경영활동 결과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검토한다.
- ③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시설장)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른 검토 결과를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전달한다.
- ④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시설장) 등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 결의사항 등을 교육, 훈련 및 기타 방법(게시판, 간행물, 회의, 전산망 등)으로 전 구성원에게 알린다.
- ⑤ 관리감독 총괄(팀장) 등은 안전사고 및 긴급사태 등에 따른 민원 접수시 안전관리 부 책임자 및 위험성 평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시설장) 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대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한다.

2) 외부 민원접수 및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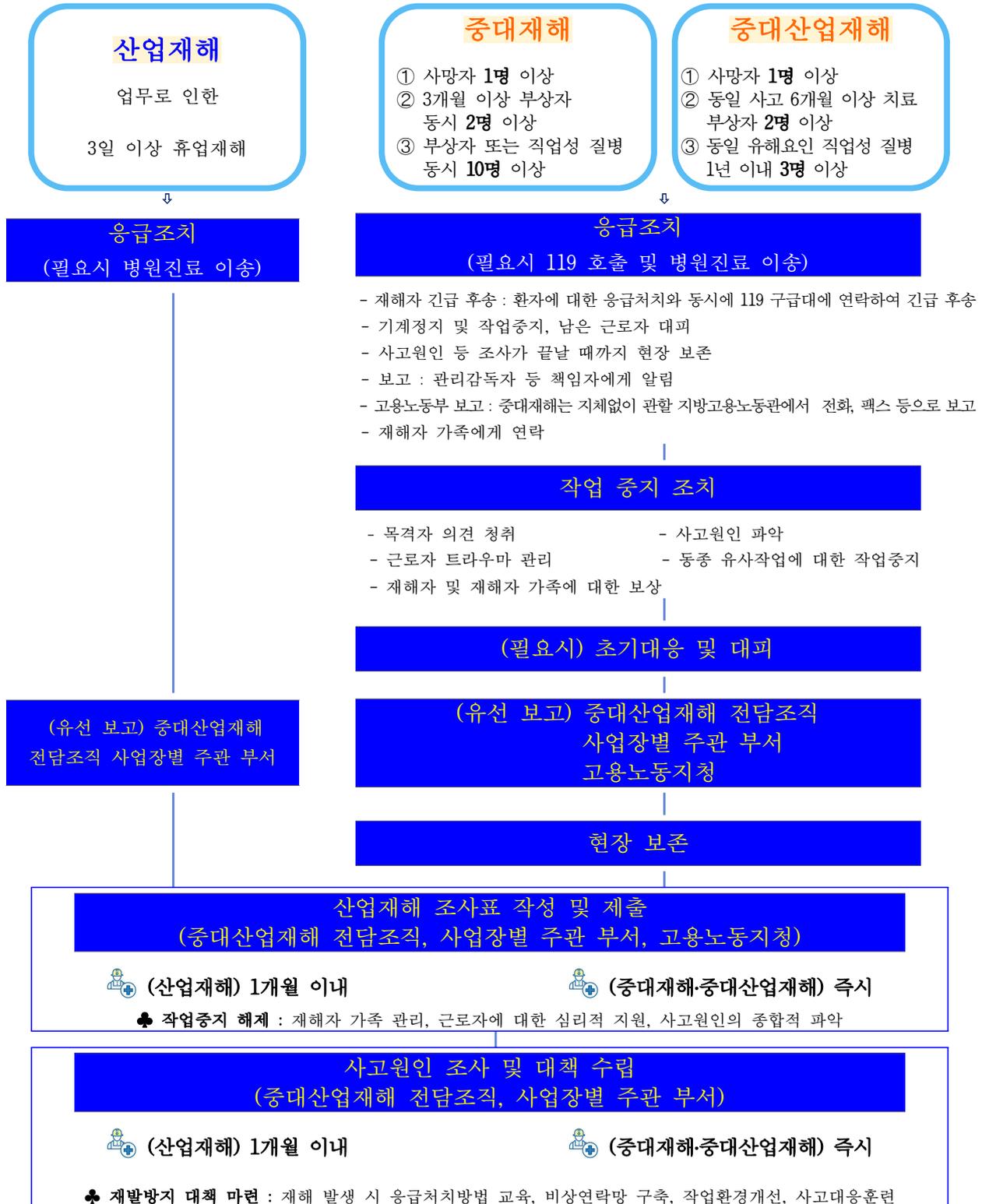
- ① 관리감독 총괄(팀장) 등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안전보건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안전관리 부책임자 및 위험성 평가 담당자 등에게 보고한다.
- ② 관리감독 총괄(팀장) 등은 접수된 민원을 정리, 분석하여 관리감독자(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한다.
- ③ 관리감독 총괄(팀장) 등은 조치된 민원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한다.
- ④ 처리된 안전보건 관련 정보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보고한다.
-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종사자 참여 평가

- 상·하반기 평가 시 붙임10. 종사자 참여평가표를 참고하여 반기1회이상 이행여부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의견청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 마련 후 이행

## 5. 위기상황 매뉴얼 및 대응조치

### ○ 중대산업재해 · 급박한 위험 시 매뉴얼 및 대응조치



- 안전보건활동(붙임11. 위험대비 매뉴얼 대응조치 점검 체크리스트) 를 통해 반기 1회 이상 매뉴얼 점검 진행
- 대응조치, 구호 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은 종사자 전원에게 반드시 공유

○ 위험대비 매뉴얼 및 대응조치 점검

가. 예방활동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 청사·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 직원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등 관리

나. 비상조치계획 수립

- 비상사태 대응체계 구성

대상	권한	역할
경영관리 책임자 (법인대표)	승인 / 지원	- 비상 경보 체계 및 절차 검토 및 승인 - 비상 경보 체계 운영을 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 승인 - 비상 경보 체계 실행 운영에 대한 주기적 확인 - 재해조사 및 원인 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시설장)	수립 / 지원	- 사고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중대 재해 및 비상 사태 발생시 체계 운영지원 - 중대 재해 및 비상 사태 발생시 운영 현황 지속적 확인 및 검토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팀장)	지도 / 지원	- 비상 경보 체계 및 절차 검토 및 승인 - 재해조사 및 원인 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 비상사태 대응 훈련 계획

- 기대효과 : 질식, 화재, 폭발사고 등 상황에 따라 사업 참여자들이 참여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해 경각심 부각 및 신속한 조치와 개인 역할의 중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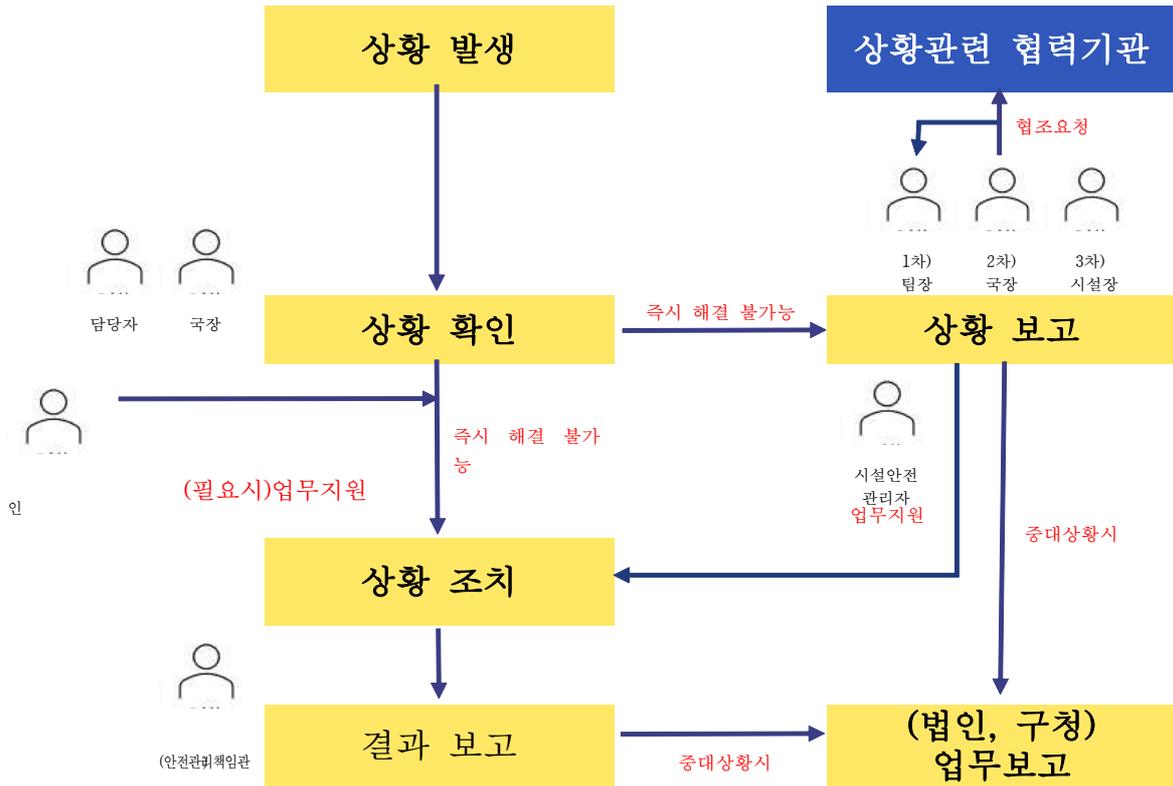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훈련시간	1시간	
훈련빈도	연 1회	8월
훈련주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소방안전관리담당자	
훈련방법	- 화재/폭발/질식 등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통한 훈련 - 비상사태 대응 훈련을 붙임12.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훈련관정	- 관내 소방서 등 관공서 연계 - 단계별 역할 분장	

○ 비상시 대비 및 대응훈련(소방훈련으로 대체가능)

- 관리부서장 등은 비상시에 관한 대비 및 대응절차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를 기록(사진 등), 보존한다.
- 관리부서장 등은 비상사태 시나리오에 따른 정기적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사태 대응 훈련 후에는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시 개정, 보완한다.
- 비상훈련 실시보고서에는 훈련일, 참가자, 측정자, 목표시간, 측정시간, 상황별 업무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비상훈련 실시 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설장)에게 보고 후, 전 종사자에게 회람 후 법인(경영책임자:법인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체) 등에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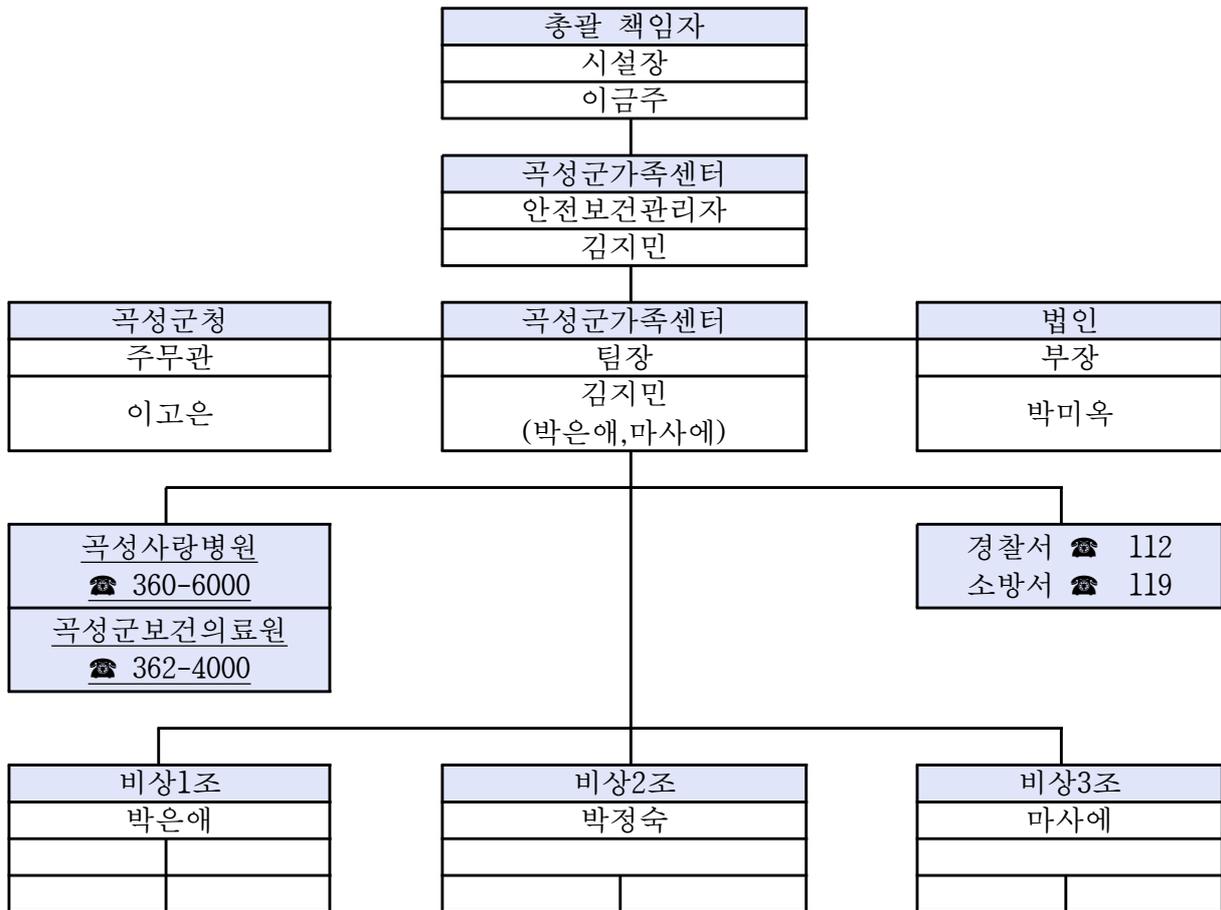
다. 위기상황 매뉴얼

\* , 경찰서, 소방서, 구청, 보험사 등



단계	내용	비고
상황 발생	-안전사고 또는 비상상황 발생	현장보존
상황 확인	- (담당자) 1차 조치(위급 상황 조치)와 함께, 사무국장에게 즉시 보고 - 즉시 조치 가능한 경우, 상황 조치 - 즉시 조치 어려운 경우, 주변인에게 사고 발생을 전파하고 응급 처치 실시, 119 구급대 신고 - (필요시) 시설안전관리인 협력 요청해서 상황 조치	1차 위급상황 조치가 우선임
상황 보고	- (담당자) 상황 발생 후, 즉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팀장, 시설장 등에게 빠른 시간 내에 보고 - (팀장) 상황에 따라 협력기관(안전관리유지보수업체, 경찰서, 보험사 등)에 연락 중대 상황 시, 관장에게 보고, 법인과 구청에 업무연락 - (시설안전관리인) 안전 조치 지원, CCTV 증거 화면 확보 등	
상황 조치	- 상황별 조치 & 후속조치 계획 - 상황에 대한 결과보고(구두 & 서면)	
결과 보고	- (담당자) 최종 결과보고 (담당-팀장-시설장) - (팀장) 후속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중대상황일 경우에는 구청, 법인에 업무연락 - (시설장) 결과에 대한 검토 & 승인	

## 곡성군가족센터 비상연락망(시설에 맞게)



### ○ 사고상황별 초기대응방법

사고 상황	초기 대응 방법
심정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CPR) 실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감전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부도체(나무, 플라스틱 등)로 사고자를 떼어냄
질식	작업을 중지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를 실시하며,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폭발	2차 폭발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폭발 장소에서 대피
기계제해	재해 발생 시 기계를 정지하여 2차 피해 발생 방지
유해물질 누출	신속히 흐르는 물로 씻어냄
인화성, 산화성 물질 누출	접화 원인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한 후, 접촉 금지

## 6.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시설·장비 현황

### ○ 안전보건 예산 현황(편성 및 집행)

#### ■ 유지보수 예산 & 장비구입 예산

구분	유지비용	시기	비용(원)
소계	-	-	
전기안전검사	곡성군청	상,하반기	
소방안전검사	곡성군청	상,하반기	
석면건축물 안전검사	곡성군청	상,하반기	
시설보안(캡스)	66,000원×12회	매월	792,000
소독방역	곡성군청	상,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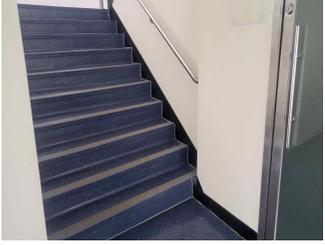
#### ■ 안전장비 및 교육홍보비

구분	내용	비용(원)	비고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약품	50,000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200,000	
현장 안전시설 개선	누전차단기 등	100,000	
안전보건 홍보	현수막, 안전표지판	100,000	

#### ■ 업무대행 유지보수 업체

구분	업체명	연락처	내용
소계	-	-	
전기안전검사	주)한길	062-361-0019	연2회 전기 점검
소방안전검사	성원소방이엔지	062-361-0019	연2회 소방 점검 (작동기능검사, 종합정밀검사)
시설보안	캡스	1800-6400	
소독방역			자체 월 1회 방역 소독 필요시

○ 서비스 제공시 안전규칙

작업공정	사진	직무상 안전 주의사항	필요도구	주의 장애
서비스 제공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시 대상자 이동시 안전상 미끄러움을 방지 한다.</li> <li>▶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날씨로 인한 눈, 비로 미끄러움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한다.</li> </ul>		
서비스 제공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모차, 휠체어 이동시 안전에 주의한다.</li> <li>▶ 프로그램 제공시 아동들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낙상 사고를 방지한다.</li> <li>▶ 무거운 박스를 이동 시에는 이동대차에 실어서 이동한다.</li> </ul>		